

2020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8. 31. ~ 2020. 9. 4.(5일간)
- 감사범위 : 2019. 1. 1. ~ 2020. 7. 31.(1년7월)

□ 감사결과 : 지적건수 15건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5건	재정상	회수 3건	신분상	
-----	-----------------	-----	-------	-----	--

감 사 관
(감 사 팀)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법률에 규정된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이 집행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며, 그 지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적절한 집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민간위탁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통해 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위탁 선정심사 및 계약체결 적정 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 위탁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및 정산 여부, 종사자 직원 채용·관리 및 인건비 집행 등 관리 적정성, 위탁사업비 유용 및 횡령 여부,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실태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된 주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과 외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서면감사에 앞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 타 시·군 감사 사례, 시의회 논의사항 및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관한 대상 부서 자료제출(2020. 8. 10. ~ 8. 20.)를 거쳐 2020. 8. 31.부터 동년 9. 4.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와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요약

(단위 : 건, 명, 원)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부과	회수	계	징계	훈계
15	10	5	-	3 (00,000,000)	-	3 (00,000,000)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 및 공금횡령·유용 등 청렴의무 위반 비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회수 등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10건은 시정 요구 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한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 및 해당 사업의 위·수탁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연찬 등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감사결과 처분계획

□ 처분요구내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부과	회수	계	징계	훈계
15	10	5	-	3 (00,000,000)	-	3 (00,000,000)			

□ 처분요구목록(15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5건	시정 10 주의 5	회수 (00,000,000)	
1	○○○○과	♠♠♠♠ 처리 위탁 관련 사항	시정	회수 (00,000,000)	
2	○○○○과	△△ 자동 ♣♣♣ 및 ♠♠♠♠ 지도·감독 소 홀	시정		
3	○○○○과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보험료 정산 소홀	시정		
4	○○○○과	▲▲▲▲▲ 위탁판매 대행사업 지도·점검 미 실시	시정		
5	○○○○과	▽▽▽▽ 폐기물 위탁처리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6	○○○○과	▼▼▼▼ 선별 위탁처리 관련 사항	시정		
7	●●●●과	▷▷ ▶▶▶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8	●●●●과 ◆◆◆◆과	남양주♀♀♀♀ 사업별 계좌 미분리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9	●●●●과	남양주♀♀♀♀ 위탁금 지출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	
10	■■과	남양주시청 ㄷㄷㄷㄷㄷㄷ 운영규정 적용 소홀	시정		
11	◆◆◆◆과	ㄱㄱㄱㄱ 예산의 전용절차 미이행 및 퇴직적립금 반납 소홀	시정	회수 (0,000,000)	
12	◆◆◆◆과	ㄴㄴ교육훈련지원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주의		
13	◆◆◆◆과	ㄷㄷㄷㄷ 지도·감독 소홀	주의		
14	●●●●과	ㄹㄹㄹㄹ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15	●●●●과	남양주 ㄱㄱㄱㄱ ㄴㄴㄴㄴ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3.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처리 위탁 관련 사항	NO. 1
---	------------------	-------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제10조(협약체결등)에 따라 ㉠㉠㉠㉠과에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함에도 20㉠㉠.㉠㉠.㉠㉠. (사)㉠㉠㉠㉠㉠㉠㉠㉠㉠㉠㉠와 ♣♣♣♣ 처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협약내용을 공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 처리 위·수탁 협약서』 제7조 보상금에 남양주시장은 ♣♣♣♣ 처리 시 1건당 40,000원을 수탁자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출동하여 현지에 ♣♣가 없을 시 1건당 20,000원을 출동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 ♣♣♣♣ 처리 청구보상금은 월 12,000,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수탁자는 매월 ♣♣♣♣ 보상금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른 보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장은 서류 미제출에 따른 청구보상금을 매월 정산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탁자는 ♣♣♣♣ 처리 청구보상금을 월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12,000,000월/월, 300건×40,000원) 내에서 신청하였어야 하고, ㉠㉠㉠㉠과에서는 ♣♣♣♣ 처리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 보험금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보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적보험료를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 하였고, 협약서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보상금 총00,000,000원을 과지급 하였으며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2018년, 2019년 2년간 실시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공증 및 지도점검을 조속히 이행하고 과지급한 위탁금 00,000,000원은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2	▼▼▼▼ 선별 위탁처리 관련 사항	NO. 6
---	--------------------	-------

- 『2019·2020년 ▼▼▼▼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 완료보고서』에서 제2절 ▼▼▼ 선별장 현황 중 장비현황과 제3절 운영비용 산정 중 감가상각비 집계표 상 장비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며, 2019년 완료보고서 감가상각비 집계표 상 2008년 취득한 선별라인콘베어의 경우 취득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감가상각비 연간금액을 12개월로 반영하였고, 차량번호 ㉠㉠㉠㉠은 집계차가 아님에도 집계차로 표시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완료보고서를 그대로 준공 완료 처리하는 등 원가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과에서는 우리시가 ▼▼▼▼ 선별·처리시설 운영 대행 협약 및 ▼▼▼▼ 선별·처리 운영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의 선별·처리 업무를 위탁한 (주)㉠㉠㉠㉠이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토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선별장에는 남양주시와 (주)㉠㉠㉠㉠의 시설·장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설·장비대장을 구비하여 적정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원가조사 용역 검토 및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 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및 시설·장비 대장을 조속히 작성·비치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3	남양주㉠㉠㉠㉠㉠ 위탁금 지출 부적정	NO. 9
---	---------------------	-------

- 「남양주㉠㉠㉠㉠㉠ 사무편람」 3. 근무규정에 의하면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남양주지회는 소속 직원 출장 시, 20㉠㉠년 ㉠월 및 ㉠월에 3시간 미만 출장임에도 출장비를 각각 20,000원씩 지급하였고, 20㉠㉠년 ㉠월에는 4시간씩 2회만 출장을 하였

음에도 8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하는 등 위탁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 남양주지회는 20○○년 ○월에 문구구입 비용을 지출하면서 20○○년 ○○월 및 ○○월에 구입한 비용(총 000,000원)을 함께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하는 등 위탁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초과 지급된 출장비 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4. 기타 지적 사항

감사결과 기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자동차 ♠♠♠ 및 ♣♣♣♣ 지도·감독 소홀 (No.2)
위법 부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협약서에 따라 위탁시설의 적정 인력 투입·배치 여부, 재산관리 사항 등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7년 △△ ♣♣♣♣ ▽▽▽자원화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조속히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
2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보험료 정산 소홀 (No.3)
위법 부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게 됨을 공지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따른 2019년 대행사업비를 2019년 12월에 지급 완료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2020. 9. 4.)까지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조속히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
3	▲▲▲▲▲ 위탁판매 대행사업 지도·점검 미실시 (No.4)
위법 부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 등 공급대행에 대한 계약서》 제12조(지도·점검)에 따르면 “갑(남양주시)”은 ▲▲▲▲▲ 등 판매 업무를 “병(각 ◆◆◆◆ 및 지점)”에게 위탁함에 있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는 2018년 12월에 ▲▲▲▲▲ 등 공급을 ◆◆◆◆(○개소) 및 지점(○개소)에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일 현재(2020.9.4.)까지 《남양주시 ▲▲▲▲▲ 등 공급대행에 대한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조속히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시정” 조치
4	▽▽▽▽ 폐기물 위탁처리사업 관리 부적정 (No.5)
위법 부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6조(운영·관리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따르면 “수탁자”는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운영·관리계획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2018년 10월 수탁자가 2019년 시설·운영 관리계획 없이 예산서만 제출하였음에도 보완 등 별도의 조치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9년 7월에는 수탁자가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2020년 예산서(시설·운영 관리계획 없음)를 제출하였음에도 전자결재(온나라)시스템에 문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보완 등 별도의 조치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5	▷▷ ▶▶▶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No.7)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2017. 4. 3. ~ 2017. 4. 28.) 시, ○○○○과가 ▷▷ ▶▶▶ ▶에서 강좌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수탁시설 운영의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향후 운영협약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토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 수탁자인 ○○○○은 분기별 정산 보고 시, 문화프로그램 및 특강 등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한 수강료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위탁금 통장에 대해서만 정산을 실시하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남양주 ▷▷ ▶▶▶ ▶ 사무편람」 3. 근무규정에는 ▷▷ ▶▶▶ ▶ 직원의 채용관련 사항 및 급여,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속 직원의 출장 시 관행적으로 관외 출장은 20,000원, 관내 출장은 1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에서는 명확한 여비 지급 규정이 없는 출장여비를 그대로 정산 처리하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여비 지급 규정을 명시하여 출장여비를 명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6	남양주사업별 계좌 미분리 및 정산검사 소홀	(No.8)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사업별 위탁관리 수탁자인 ○○○○ 남양주지회는 남양주사업별 위탁 운영 중 시청 ○○○○과의 보조금 지원 사업인 “○○○○” 사업에 참여하면서 남양주사업별 위탁금 계정(농협/○○○-○○○-○○○-○○)에 ○○○○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 사업의 참여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 인부임의 00%(세전 금액) 및 4대 사회보험료(2020년 사업장 부담금)를 사업별 운영비 예산에서 지출(총 0,000,000원) 하였다. • 이에 대해 ○○○○과에서는 ○○○○ 남양주지회가 「남양주사업별 위탁 관리 운영협약서」 제13조(비용의 집행)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정에 두 개의 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함께 예산 집행하고,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지원 	

	<p>인원(1명)의 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 처리(남양주사업별 위탁금 정산 시, ○○○○ 사업 보조금을 함께 정산)하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 남양주지회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사업 완료 시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7	『남양주시청 ○○○○ 운영 규정』 적용 소홀	(No.10)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청(○○○) ○○○○ 운영규정」 제6조(보육대상)에 따르면 만 0세부터 만5세 미만의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입소자 및 퇴소결정)에 따르면 입소대상은 남양주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생후 12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르면 보육대상에서는 만0세(생후 1개월~11개월)가 포함되어 있으나 입소자에는 제외되므로 각 조항에서 보육 및 입소대상에 대하여 일치하도록 명확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 같은 규정 제7조(입소자 및 퇴소결정)제3항에 따르면 ○○○에 정원 증가 또는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아동을 모집할 경우에는 대기자 중에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호(20○○.○○.○.) 『2019년 남양주시청 ○○○○ 신입원아 모집 알림』 및 ■■■과-○○○○호(20○○.○○.○.) 『2020년 남양주시청 ○○○○ 신입원아 모집 알림』에 따르면 동일 순위자 간 경합 시 공개추첨을 진행하고 추첨결과 미 선발자는 대기자로 관리하며 입소결정자 중 취소자 및 추가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소한다고 안내하고, 실제 대기순번을 관리하는 등 운영규정과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준수 및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 	

8	예산의 전용절차 미이행 및 퇴직적립금 반납 소홀 (No.1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남양주에서는 2019년 12월 근로(사례관리) 담당자 급여 지급 시 『근로(사례관리) 위탁사업』 예산부족으로 근로(사례관리) 담당자 급여의 급여 총0,000,000원 중 000,000원은 근로(사례관리) 위탁사업비로, 0,000,000원은 별도 절차없이 『운영 보조사업』 보조금(국·도비)으로 지급하고, 2019년 『운영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과(구. 과)에서는 『2019년 근로(사례관리) 위탁사업』 및 『2019년 운영 보조사업』 정산검사 시 이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2000.0.00. 정산완료 한 사실이 있다. 경기남양주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에서 적합한 퇴직적립금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에도 2000. 00. 00.~2000. 0. 00.까지 근무한 과, 2000. 0. 0.~2000. 0. 00.까지 근무한 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적립금 0,000,000원을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과(구. 과)에서는 『2019년 근로사업 운영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시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토록 요청하여야 함에도 별도 조치 없이 정산 완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준수 및 미반납 된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9	교육훈련지원 위탁금 목적 외 사용 (No.12)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사업위·수탁계획서』에 따르면 교육훈련은 사업 및 기업 참여자에게 교육훈련을 통하여 근로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근로 활동 및 탈빈곤 촉진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 -0000(2000.0.0.)호로 시행된 ‘근로 지원(△△△△, 교육훈련 지원) 운영 지침 송부’에 따르면 종사자 교육의 범위는 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종사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재무설계사 양성과정, 직업상담 교육, MBTI 교육, 산업안전관리 교육,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육, 지원연수, 워크숍 참가비 등은 지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남양주에서는 과 외 명의 종사자격증은 이들의 담당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2019년도에 종합자격 취득비용 총 000,000원을 교육훈련지원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과(구 과)에서는 『2000년 교육훈련지원 사업』 정산검사 시 이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정산완료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0	지도감독 소홀 (No.13)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사업 안내』 제3장 사업 프로그램 1. 사례관리 2. 과정에 따르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하며, 참여자당 과정 참여 횟수는 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동안 총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남양주터에서는 참여자 과 외 인에 대해 1회당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함에도 4~6개월 동안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참여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지침』 제40조(평가 및 지도·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4월말까지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과)에서는 2019년 남양주 지도·점검을 2000. 0. 0. ~ 0. 0.에 실시 및 2020년 남양주 지도·점검을 2000. 0. 00. ~ 0. 0.에 실시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지침 등에서 규정한 기간 및 보고를 미준수 하였으며, 참여자 실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1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No.14)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일시 위탁운영 협약서(2019.11.18.)』 제3조(위탁조건)제5항에 따르면 “법인”은 거리상담 및 거리배회 의 여가 공간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형버스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p>이 조항에 의거한 협약서 『▣▣▣▣ 거리상당 이동버스 위탁운영 협약서(2000. 00.00.)』 제3조(사업계획서)에는 “법인”은 “버스”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12조(버스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버스 운영에 관한 운행일지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11조(지도 감독)에는 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버스 운영상황 등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인 법인은 2000.00.00.협약 이후 ▣▣▣▣ 거리상당 이동버스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세부사항 자체규정 및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과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년 사업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하는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부서의 승인 없이 전용제한 항목인 인건비를 무단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감독 부서인 ●●●●과에서는 이에 대한 용도 외 사용여부,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양주시 일시 ▣▣▣▣▣▣ 운영 보조금을 ●●●●과-0000(2000.00.00.)호로 정산하고 보조금 정산내역을 확정하여 경기도 청소년과로 정산자료를 제출(●●●●과-0000(2000.00.00.))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예금이자를 세입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준수 및 조속히 위탁금 정산에 따른 예금이자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12	남양주시 ▣▣▣▣▣▣ ▣▣▣▣▣▣ 운영에 관한 사항	(No.15)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에서는 「남양주시 ▣▣▣▣▣▣ ▣▣▣▣▣▣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 ▣▣▣▣▣▣협의회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 ▣▣▣▣▣▣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탁자가 신청한 보조금 세부내역의 금액과 최종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서 금액이 상이함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2019년 남양주 ▣▣▣▣▣▣ ▣▣▣▣▣▣ 위탁운영 결과보고(●●●●과-000 (2000.00.00.))”에 정산 완료 조치를 하였으며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 	

	<p>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집행잔액 00,000원 중 0,000원은 지도감독 부서의 승인 없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무단 전용하고 0,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 처리 하였음에도 ●●●●과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p>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